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. 7. 19 선고 2023가단101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

피고B

변론 종결2023. 6. 21.

판결 선고2023. 7. 1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. 2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

C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'4,991,984원 및 그 중 1,988,938원에 대하여 2019. 6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89%의 비율로 계산한 돈'의 지급을 명하는 2019. 7. 15.자 지급명령(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74189)을 받은 채권자로서, 위 지급명령은 2019. 8. 2. 확정된 사실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, D는 2019. 1. 1.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C와 피고를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은(직계비속 5인, 상속지분 각 1/5) 2019. 1. 29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,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지분 1/5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(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취소의 범위가 C의 상속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었고,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C의 상속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)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드모데

별지